

서울특별시 마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9. 9.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 9. 2. 이필레 의원 외 5인

나. 회부일자: 2020.9.3.

다. 상정일자

- 제243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2020.9.9.)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장덕준 의원】

가. 제안이유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소의 선정 기준, 지원 근거 등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 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서민 경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2)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3)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6조)
- 4) 착한가격업소 운영 현황 점검 등을 규정함(안 제7조)
- 5)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유공자 표창에 대해 정함(안 제9조)

3. 검토보고(전문위원 최국모)

- 본 안건은 2020년 9월 2일 이필레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되었으며 2020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됨.
- 본 제정 조례안은 물가안정을 위해 2011년에 마련된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 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우리 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총 10개의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됨.
- 본 조례안의 관련 법령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조를 보면 국가는 시장의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 19 전염병 재난, 침체된 경제 등에 따른 고용 불안정과 급격한 임금상승으로 인해 소비자 물가 변동 폭이 커지고 있어 국민의 안정적인 소비생활 도모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따라 우리 구의 개인 서비스 사업체를 대상으로 ‘착한 가격’을 제공하는 업소를 발굴, 지정하고 해당 업소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주민들 스스로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서민경제의 구축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바, “착한가격업소”란 관내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하며,

-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하여 2019년도에 실시된 ‘2018년도 마포구 사업체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숙박업 441개소, 음식·주점업 7,988개소, 이·미용업 1,426개소, 세탁업 250개소, 욕탕 및 마사지 등 신체관리 서비스업 141개소 등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그 중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곳은 35개소로 나타나고 있음.
- 안 제4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 바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이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하는 등 이 제도의 정착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였고,
- 안 제6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바,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교부, 방역 물품 및 소독 지원,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홍보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 이는 착한가격업소 유지관리와 지속 가능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원 방안으로 사료됨.
-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지정 이후 사후관리에도 힘쓰도록 함으로써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하고 있는 바, 지정 업소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지정업체에 대한 우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지정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 안 제9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착한가격업소의 정착화 및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짐.

- 이와 같이 검토한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시장의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민 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수행하고자 제정되는 것이며, 이 조례안의 제정으로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보다 내실 있는 지원이 가능할 것이고, 소비자 물가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5. 토론요지: 없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 8. 기타: 없음

【참고자료 1】

마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정현황 (2020. 8. 14.기준)

총계	외식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소계	한식	일식	중식	양식	기타 외식	소계	세탁업	이·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
35	22	14	-	2	1	5	13	-	12	-	-	1

NO	업종	업소명	행정동	도로명주소
1	한식	고향집	망원1동	포은로8길 28
2	한식	남원수창골추어탕	망원2동	망원로11길 3
3	한식	미소국수	연남동	동교로27길 41
4	한식	봉주르	서교동	와우산로 155-1
5	한식	빈대떡마을	망원2동	망원로 97
6	한식	솔잎식당	도화동	마포대로4길 46
7	한식	연희동 할머니네	연남동	성미산로 100
8	한식	참맛 닭곰탕	망원1동	망원로8길 36
9	한식	풍년갈비	연남동	동교로 264
10	한식	한성축산식당	연남동	연남로 33
11	한식	효성마루	아현동	마포대로7길 15
12	한식	남남분식	성산2동	모래내로7길 89, 1층 2호
13	한식	망원시장손칼국수	망원1동	망원로8길 29, 1층
14	한식	웰빙뚝배기	서교동	동교로12길 21
15	중식	동일루	망원1동	포은로 75
16	중식	차이나는만두	공덕동	백범로 205, 101동 B216호
17	경양식, 일식	웨스턴후라이드라이스	서교동	홍익로 26
18	기타외식업	라푸스코 마포점	공덕동	만리재옛길 18
19	기타외식업	오군 수제 고로케	연남동	동교로27길 62
20	다방업	커피농부와정원	상암동	월드컵로42길 14, 102호
21	다방업	경성커피컴퍼니	도화동	삼개로 7-1, 1층
22	다방업	구대회커피	신수동	창천로 2길 9, 1층
23	이·미용업	꽃미용실	공덕동	임정로 73
24	이·미용업	미스미용실	신수동	토정로17길 22
25	이·미용업	뷰티헤어클럽	망원1동	희우정로 92
26	이·미용업	새론헤어라인	서강동	와우산로3길 13
27	이·미용업	에덴미용실	망원1동	망원로3길 13
28	이·미용업	연백이발관	공덕동	만리재옛길 5
29	이·미용업	지영미용실	공덕동	백범로 205, 101동 104호
30	이·미용업	오늘머리하는집	망원2동	월드컵로31길 48, 1층
31	이·미용업	주연헤어센스	망원2동	희우정로10길 30
32	이·미용업	이화미용실	망원2동	방울내로7길 29, 1층
33	이·미용업	헤어스타	용강동	독막로 266, 203호
34	이·미용업	머리사랑	용강동	독막로40길 8
35	기타서비스업	와이앤케이 스튜디오	도화동	삼개로24, 용현빌딩 3층

【참고자료 2】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

항 목	평 가 지 표
가격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의 품목이 있을 것 · 가격 안정을 위해 1년 이내 가격을 인하한 품목이 있을 것 · 가격 안정을 위해 가격을 동결하고 있는 품목이 있을 것 · 지역의 평균 가격 이하의 품목이 여러 개가 있을 것
위생·청결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닥 내수처리 및 수세, 배수시설의 청결도 · 청결한 위생복, 위생장갑, 위생모, 위생마스크 등 착용도 · 식탁 의자 정리도, 행주 등 용도별 사용, 소독용품 비치 또는 손씻기 · 시설 설치, 정수기 위생관리 수준 등 · 오수 악취 없도록 수세 소독 및 환기 등 관리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척제, 에어타월 또는 위생종이 구비, 남녀 구분 등 · 창고, 벽 천장(조명시설 등), 환기 방충시설 등 청결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닥·선반 등 세척 및 청결 유지 정도
서비스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의 친절도
공공성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등 지자체 시책 이행 여부

【참고자료 3】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